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1460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이지영, 조아라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1,875,2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875,2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20. 12. 1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주)는 2017. 2. 21. C에게 1,500만 원을 만기 2022. 2. 21.,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주)는 2019. 1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35120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2,628,869원 및 그 중 14,733,941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6. 9.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1,875,284원[= 22,628,869원 + 9,246,415원{ = 14,733,941원 × (821일/365일) × 0.279}]이다.

라. C의 부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1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F, G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2. 19.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가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노후 임대수익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망인에 대한 간호, 부양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위 분할협의를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근소하게 미달하는 정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근소하게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답변서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주장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12,755,4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330,135,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5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당시 보증금
합계액은 198,000,00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41,026,755원[=
184,620,400원(= 712,755,400 - 330,135,000 - 198,000,000) × 2/9]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1,875,284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둘 중 더 적은
31,875,284원이 된다.

마.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1,875,2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1,875,2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부동산 목록

1. 대전광역시 서구 [] 192.7㎡

2. 대전광역시 서구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중주택(호), 제1,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2.65㎡, 2층 내지 3층 각 65.68㎡, 4층 94.87㎡ 관.

